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5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지원 강화 ····· 2

Ⅰ.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3.

(3) 회 부 일 : 2025. 8.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지원 강화

가.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범위[1]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음.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291만명이고, 8조 5,084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 계 ('07년 이후)
가입자수	237,167	274,094	288,570	266,990	242,875	195,611	2,909,561
공제지급건수	77,411	84,459	99,388	97,850	119,626	121,802	836,688
공제지급액	6,572	7,900	9,981	11,534	15,517	17,518	85,08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1)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5명~10명 미만

나. 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금의 비과세소득 규정 신설(김미애 의원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김미애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5호)	□ 소상공인공제 가입장려금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 신설	
○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훈급여금 등 -「국가보안법」상 상금 - 훈장의 부상(副賞) - 직무발명보상금 등 - 국군포로 위로지원금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종교인소득 등 - 무보수 위원 수당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신 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차목 신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가입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신 설>		○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미부과

현 행	김미애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시행일: 공포 후 1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	○ ○

* 김미애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5), 안도걸의원안 2025. 10. 27. 발의(의안번호 13713)

□ 개정안은 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김미애의원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이고,

안도걸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 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음. 먼저 ① 사업수행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자체에서 지급하는 가입(희망)장려금이 있음.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요건[2] 및 지자체별 요구조건[3]을 충족하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2)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3)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지자체별로 월 1~3만원의 지원금이 최대 1년간(12회) 지급됨. 해당 장려금은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이 공제부금과 함께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함께 지급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소득(폐업·은퇴 등 정상 사유로 공제금 수령시)[4] 혹은 기타소득(임의 해지 등 비정상 사유로 수령시)[5]으로 과세됨.

다음으로 ②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임의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음. 1) 노란우산공제의 운영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가입 장려를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3~10만원 상당의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 모 은행의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 해당 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소상공인 중 6회차 부금 납부 후 익월 지급일까지 정상계약을 유지하고, 6회차 부금 납부일 및 익월 납부일까지 해당 은행계좌에서 공제금을 자동이체 중인 자를 대상으로 10만원(세금 공제 후, 세전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12만 8000원)을 현금 지급한 사례가 있음.

이 중 안도걸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가입장려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이고, 김미애의원안은 민간금융기관 등이 임의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보임[6].

□ 개정안은 최근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한 가입 유인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3년·2024년도의 신규 가입자수는 2022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2022년 대비 60%이상 증가하였음. 따라서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자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 계 ('07년 이후)
신규가입자수	237,167	274,094	288,570	266,990	242,875	243,612	2,957,562
해약환급금 지급 건수	32,153	30,218	30,952	44,295	71,461	69,723	-
공제지급건수	77,411	84,459	99,388	97,850	119,626	121,802	836,688
공제지급액	6,572	7,900	9,981	11,534	15,517	17,518	85,08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6)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김미애의원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지급 장려금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란우산 공제 확산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이미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7]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법인의 대표자 등이 납부한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수준별로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금 수령과정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소득수준별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6천만원	6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제지원금 비과세를 통한 공제부금 납입 장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먼저 김미애의원안의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속적인 수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됨. 또한 지원금 규모도 최대 세후 10만원 수준으로, 기타소득 비과세를 통해 감면되는 금액이 약 28,200원[8] 정도에 불과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안도걸의원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인당 12~36만원 수준인데,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4%)을 고려할 때 비과세 규모는 1인당 5천원~1.5만원 수준으로 비과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셋째, 김미애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불분명함.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의 규율 범위는 민간금융기관이 임의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법률 문언

8) 신규가입자가 지원받는 실수령액이 1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세 납부금액까지 포함한 기업의 지출금액은 12만 8,200원임. 즉 기업이 12만 8,200원을 지출하면 기타소득세 2만 8,200원(12만 8,000원×0.22=28.200원)을 납부한 후 신규가입자는 10만원을 실수령하게 됨.

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규율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 ① 폐업·은퇴 등 공제금 수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제금과 함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데[9], 개정안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 규정간 불합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임의 해지 등의 사유로 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제금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9)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한 가입장려금은 '납입금'에 해당하므로,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소득금액기준 상향 등 (전재수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공제부금 납입한도 :
-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시행령 규정사항

○ 공제적용 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table><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tr><td>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4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td><td>□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부금 납입한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득 기준 금액 상향
<table><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tr><td>5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tr><td>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tr><td>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4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td></tr>
</table>

* 전재수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087)

□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가장 높은 공제한도(60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금액 기준의 상한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6조의3[10]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자 또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법인의 대표자가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수준별로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금액 구간(사업소득금액 4천만원→5천만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소득기준 금액 상향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속된 고금리·고물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자 수는 2022년 867,292명에서 2023년 986,487명으로 약 12만명이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연도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폐업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폐업자 수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비중	폐업자 수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비중	폐업자 수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비중
2019년	922,159명	41.4%	526,377명	40.8%	69,587명	40.1%
2020년	895,379명	43.1%	490,189명	43.2%	67,547명	43.5%
2021년	885,173명	45.6%	456,839명	45.1%	65,983명	43.6%
2022년	867,292명	46.8%	438,023명	45.9%	37,656명	78.1%
2023년	986,487명	48.9%	499,677명	47.8%	75,668명	44.6%

주: 폐업사유로는 사업부진 외에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 등이 있음
자료: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중 폐업공제금 지급액 역시 2019년 6,142억원에서 2024년 1조 3,908억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폐업자 수 및 폐업공제금 지급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소득공제부금의 추가 납입을 장려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폐업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제지급건수	75,493	81,897	95,463	91,130	110,015	110,005
공제지급액	6,142	7,283	9,040	9,682	12,600	13,908

둘째, 개정안은 최근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

인 공제제도에 대한 가입 유인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3년·2024년도의 신규 가입자수는 2022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2022년 대비 60%이상 증가하였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 계 ('07년 이후)
신규가입자수	237,167	274,094	288,570	266,990	242,875	243,612	2,957,562
해약환급금 지급 건수	32,153	30,218	30,952	44,295	71,461	69,723	-
공제지급건수	77,411	84,459	99,388	97,850	119,626	121,802	836,688
공제지급액	6,572	7,900	9,981	11,534	15,517	17,518	85,08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07년 제도 출범 당시 3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금액 별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한도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2024년 및 2025년 현재와 같은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및 소득기준 금액이 설정되었음.

또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노란우산 제도확산을 위한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추가되었으면 하는 혜택으로 "소득공제 상향, 비과세 등 세제지원 확대(30.4%)"가 선정되었고,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으로 세제지원(51.9%)이 자금지원(71.8%)을 이어 2위를

기록하였음을 참고할 때 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자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할 경우 저축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59.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부채액은 평균 1억 8,5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한도는 최대 연 600만원에 불과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11].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공제한도인 200만원 또는 300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퇴직소득으로 적립되는 연평균 퇴직급여 635만원 대비 31.5% 또는 47.2%에 불과하므로[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노후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득기준상향을 통한 공제부금 납입 장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가입자 1인당 평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은 249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57만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11)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9.

12) 2022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2023. 12.

[2022년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원)

구 분	공제대상인원	비율	공제대상금액	비율	1인당 평균 공제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895,417	67.2%	2,226,259	68.4%	249만원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79,285	21.0%	717,029	22.0%	257만원	300만원
1억원 초과	156,819	11.8%	312,017	9.6%	199만원	200만원
총계 및 평균	1,331,521	100.0%	3255305	100.0%	245만원	-

자료: 국세통계포털

또한,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5% 이상이 공제한도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공제한도 적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사업소득금액 (한도)	소득공제 적용인원(A)	공제한도 적용인원(B)	한도적용비율 (B/A)
2021년 귀속	4천만원 이하 (500만원)	918,834	112,338	12.23%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92,111	126,183	65.68%
	1억원 초과 (200만원)	102,663	87,406	85.14%
	총계	1,213,608	325,927	26.86%
2022년 귀속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005,662	140,974	14.02%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211,070	138,579	65.66%
	1억원 초과 (200만원)	114,789	98,450	85.77%
	총계	1,331,521	378,003	28.39%

자료: 국세청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적용되는 구간이 확대되더라도 사업소득 4천만원~5천만원 구간내의 평균 공제액 및 공제한도 적용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조세감면액은 2018년 2,179억원에서 2023년 3,653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고,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소득공제 기준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연평균 41억원의 추가 세수감이 예상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감면액	2,179	2,543	2,770	2,950	3,285	3,653	3,812	4,06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2024년 12월 및 2025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므로,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49

라. 소상공인 공제 임의해약시 수령한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한도 설정(송재봉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및 제7항)	□ 임의해약시 수령한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한도 설정
○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때,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등(시행령 제80조의3제4항)	○ (현행과 같음)
○ 폐업 등 공제금 수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되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단,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 (현행과 같음)
○ 소득세의 부과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	○ 소득세의 부과 한도 변경 -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과 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

* 송재봉의원안 2025. 6. 23. 발의(의안번호 11014)

□ 개정안은 폐업 등 공제금 수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임의해지되어 지급받는 환급금(기타소득)에 대한 소

득세의 부과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은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 환급금과 ②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임의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폐업 등 공제금 수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되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타소득을 산출한 후, 해당 금액에 기타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산출함. 다만 이 경우 소득세의 한도는 공제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받게 되는 환급금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그 한도를 현행 공제환급금에서 공제환급금과 동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노란우산 공제를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부과하게 될 세금의 규모가 동 제도를 활용하여 감면받은 세액규모를 초과하지 않아,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산출하는데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제도는 가입자가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

액을 당해년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그런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개인별 소득금액, 적용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로 인해 감면받은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환급절차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13]

둘째, 동 조항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조항은 과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대해 해지가산세[14]를 두고 있었던 시기에 규정된 것으로서, 당시 해지가산세와 소득세의 이중 부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제한하려는 보완적 규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5]

문 의 처
02)6788-5149

13)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1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한편, 공제부금과 그 성격이 유사한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금 납입시의 소득공제 제도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납입 운용 단계에서는 면세혜택을, 수령시에는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금수령 규모 및 수령방식(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금 제도 등을 통해 감면된 세액규모만큼 수령시의 세액 규모를 한정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